

건설현장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 산업재해 보호강화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4627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의자 : 오세길 의원

찬성자 : 강정수, 설재영, 함미정, 신진미,
최병순, 송용석, 최미자, 정홍근,
김세원, 김태민, 이원배, 박순호,
김명현, 정인화, 최혜연, 양유환,
김동성, 정능호(18인)

1. 주 문

건설현장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의 산업재해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및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건설현장의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은 현장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소속 및 고용·계약 형태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과 보호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이들이 산업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수신처: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4. 건의안: 별첨

건설현장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 산업재해
보호강화 촉구 건의안

건의안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건설현장 감독·건설사업관리 인력 산업재해 보호강화 촉구 건의안

최근 서울 서소문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안전점검 중 구조물이 붕괴해 감리단장과 현장소장, 외부 안전 전문가 3명이 사망하고, 현장을 점검하던 서울시 공무원 2명을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의 위험이 시공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장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감독·감리 등 안전관리 인력에게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인력은 단순한 행정 인력이 아니라 공사가 설계와 기준에 맞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위험요인을 점검하며, 필요시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등 건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다.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의 2026년 2분기 통계에 따르면, 등록된 건설기술인은 8만 9,505명이며, 이 가운데 실제 건설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시공사 근로자와 동일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시공사와는 별도의 소속·계약관계에 있어 보험·안전관리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사의 공사 원가에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 경비가 반영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관리하는 등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공사 단계부터 마련되어 있다.

반면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은 이러한 현장 단위의 보험·안전관리 체계에 포함되지 않고 개별 용역업체에서 보험 가입 및 관리가 되고 있으며, 용역대가에 산재보험료와 안전비용을 별도의 법정 항목으로 명확하게 계상·관리하는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 용역업체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보험 가입 및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특히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한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까지 쟁점이 되어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과 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수행하는 공사현장 순회점검과 위험공정 입회, 위험구역 확인 등 현장업무의 특성과 위험노출 정도를 업무상 재해 판단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도 미흡한 실정이다.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이 실제 업무와 위험 수준에 걸맞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건설현장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대형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발주자 또는 시공사가 주도하여 현장 참여 인력을 하나의 보험 체계로 묶는 통합보험제도(OCIP·CCIP)를 활용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에도 통합된 체계 안에서 일관된 보상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보호를 개별 업체에만 맡기기보다 현장 단위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이라면 소속이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산업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이 산업재해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안전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직군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력에 대한 산업재해 보호를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의 산재보험료와 안전 관련 필수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산정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 다양한 고용·계약 형태로 일하는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이 실제 현장 근무 실태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감독·감리·건설사업관리 인력의 현장업무 특성과 위험 노출 정도가 업무상 재해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명확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라.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이 정작 산업재해 보호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감독·감리·건설사업 관리 인력이 맡은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일동